

국무총리지시 제 10호

1967.7.11.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재해대책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

국가의 건설사업은 충분한 재해대책의 병행 없이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.

급반 새로 시행을 초래된 풍수해대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가 중앙에 설치되어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을 종합조정하게 되었습니다.

이에 즈음하여 재해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 국민적 참여 측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1. 중앙 이전회의의 역할의 직을 맡게 되는 각 해당 중앙관서의 장을 비롯하여 풍수해대책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 본부에 파견근무하게 되는 각 해당 중앙관서의 공무원은 방재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.

2. 풍수해 대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업무는 이를 재해대책 본부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고 하부 조직으로서 주 시, 도에 지방 재해대책 이전회를 설치 재해대책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명분의 규정이 없는 방재 조직에

25

13

국무총리지시 제 10 호

1967.7.11.

관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.

3. 재해대책 업무에 관한 대의발표 및 보도는
재해대책본부에서 일원화하여 발표 또는 보도할 것.

4. 중앙재해대책 임시회와 재해대책본부의 사무
실을 7월 3일부터 부정기로 청사 신관으로 이전하여
업무를 집행키로 되었으니 재해응급대책 업무에 적극
협조하기 바람.

5. 각 해당 부처에서 방재(재해의예방, 재해
응급대책, 재해복구 및 기타 재해대책)에 관계되는
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동 계획을 실시하였을 때에는
지체없이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본부장에게 보고
할 것.

국 무 총 리

수신처.

가. 10-29, 과학기술처, 중앙곤상대,
산림청, 수산청, 나. 1-11.